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1998. 11. 7  
교육사회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나. 회부일자 : 1998년 11월 23일

다. 상정일자 : 1998년 12월 7일

(제155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 2. 제안설명요지 (부교육감 꽈창신)

### 가.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충청북도교육청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5조에 의하여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료와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및 일반적인 운용사항을 통합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기관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운영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기관별 사용료 및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제33조, 제40조)

- 이용자의 제한규정을 정함 (안 제15조, 제24조, 제34조, 제38조)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상근거 마련 (안 제16조, 제25조, 제35조, 제39조)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문기)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충청북도교육청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5조에 의하여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료와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및 일반적인 운용사항을 통합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 안 제13조 휴관일 제1항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열람실은 연중 개관하여 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행정편의주의로 휴관일을 정하는 것은 도서관 기능에도 역행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2. 제2장 교육연구원 제5조 제작실비 징수  
제3장 단재교육원 제7조 경비징수  
제4장 도서관 제11조 사용료  
제5장 학생회관 제26조 사용료 제27조 사용료의 감면

제6장 약영장 제33조 사용료 징수

제7장 공동실습소 제40조 사용료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시설, 설비 등의 사용료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항으로서 징수 대상, 징수금액, 징수방법, 감면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고

사용료 등의 징수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직속기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직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규정임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함

따라서 이러한 사용료 등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본 조례안에 자세히 규정하거나 최소한 교육규칙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4. 질의및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 6.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공동실습소에서 실습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실습소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용자가 변상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변상하도록 하고
- 또한 공동실습소에서 실습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 것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므로 이 조항은 삭제

###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39조 제1항중 “과실로”를 “중대한 과실로”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

##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첨 부 서 류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제안서식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본문
- 수정동의 조문대비표 (원안 : 수정동의)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본문 (원안+수정동의)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          |         |
|----------|---------|
| 의안<br>번호 | 관련<br>호 |
|----------|---------|

제안년월일 : 1998년 12월 7일

제안자 : 박노철 의원

## 1. 수정이유

- 공동실습소에서 실습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실습소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용자가 변상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변상하도록 하고
- 또한 공동실습소에서 실습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 것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므로 이 조항은 삭제

## 2. 주요골자

- 안 제39조 제1항중 “과실로”를 “중대한 과실로”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

조례 제 호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9조 제1항중 “과실로”를 “중대한 과실로”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 수정동의 신구조문대비표

| 원 안   | 수 정 동 의  |
|---|--|
| <p>제39조(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가 실습중 고의 또는 <u>과실로</u> 실습소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p> <p>② 이용자가 실습중 발생한 고의 또는 <u>과실로</u>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p> | <p>제39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가 실습중 고의 또는 <u>중대한 과실로</u> 실습소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삭 제)</u></p> |